【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검토경과

○ 제출일자 : 2020년 10월 26일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장(미래공간개발본부)

○ 회부일자 : 2020년 10월 28일

2. 제안이유

○ 신청사 건립계획 수립 및 예정지 선정 등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설치한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의 구성원이 2020년 7월 10일자 조직개편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의 구성원 변경(안 제7조)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조례안 참조

나. 관계법령 :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4조 및 제12조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마.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0. 9. 21. ~ 2020. 10. 12.(21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아님

3)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개선의견 없음

5) 갑질영향심사 : 개선의견 없음

6)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조례안 참조)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7월 10일자 조직개편으로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의 구성원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려는 것임.

○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서 신청사 건립에 관한 사항은 미래공간개발본부에서 담당하고, 미래공간개발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사항은 경제부시장이 분장함에 따라 안 제7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행정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자치행정국장"을 "미래공간개발본부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